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5나4850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7. 선고 2004가합76416 판결
변 론 종 결 2006. 4. 18.
판 결 선 고 2006. 5.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 2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5,717,650원 및 이에 대한 2004. 9.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는 보험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5호증의 1, 2, 3, 을가 제6호증, 을가 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8. 4.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 6,210원을 납입하였다.

① 상품명 : 무배당 차차차 교통안전 보험

② 보험기간 : 2018. 4. 21.까지 20년간

보험자의 책임개시일 : 1998. 4. 21.

주피보험자 : C

보험수익자 : A

보험료 : 월 6,210원, 납입기간 : 10년

증권번호 : D

③ 보험내용 : 주계약, 재해보장특약, 재해입원특약, 항공·배·열차 특약

④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내용



㉔ 주계약 : 주계약 약관 제11조의 제1호 내지 제14호가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 사유{“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뺑소니차량에 의한 사고”, “교통재해”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애상태가 되었거나 주계약 약관 별표 4(교통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계약 약관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내용대로 보험금을 지급한다(을가 제1호중의 2)

㉕ 재해보장특약 : 피보험자에게 재해보장특약 약관 제3조의 제1호 내지 제6호가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해보장특약 약관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내용대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중 위 재해보장약관 제3조 3호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보장특약 약관 별표 3에서 정하는 장애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휴일 재해장애연금 매 월 150만 원씩 10년간 지급하는 것이다(을가 제1호중의 3).

㉖ 재해입원특약, 항공·배·열차 특약 : 기재 생략

나. C은 일요일인 2004. 1. 18. 11:31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선 F역 승강장 내에서 수서 방면에서 대화 방면으로 진행하는 3122호 전동차가 승강장내로 진입하는 순간 철로로 뛰어들어 전동차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C은 이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출혈, 개방성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배뇨장애, 의사소통장애, 복잡한 대뇌기능장애 등의 장애가 남게 되었고, 팔다리를 움직여 스스로 일어서거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위 장애등급분류표의 제1급 장애상태가 되었다(그후 C은 치료중 2005. 10. 9. 사망하였다). 한편 C은 1999. 1. 19. G신경정신과 의원에서 내원하여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소화불량, 울화, 우울감 등



으로 15개월 전부터 고생하고 있다고 호소하여 기분부전장애 의증, 반응성 우울증 장애 의증으로 진단받고 1999. 2. 22.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1년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세 차례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한 달여 전인 2003. 12. 10.에는 우울감, 불면증, 복부팽만, 명한 증상 등으로 내원하여 4일분의 약을 받아간 일이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C이 제1급 장애가 상태가 되는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당한 것인데 이는 위 재해보장특약 제2조,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며, 위 재해보장특약 제11조에는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주계약 제14조 (1) 1호의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더라도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C이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은 위 재해보장특약 상의 휴일 재해장해연금 매월 150만 원씩 10년간 금액을 일시불로 환산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의 위 재해보장특약 약관상의 휴일 재해장해연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보험사고가 위 재해보장특약 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 상의 “재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위 재해분류표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계약 제14조를 논하기에 앞서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



니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재해보장특약 약관 제1조 (3)은 ‘ . . . 특약에서 담보하는 사망(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는 것으로 정부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원인으로 사망하는 . . .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약관 제3조의 각 호에서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재해보장특약 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해당 분류표에서 다른 사고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1995. 1. 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으로, 그 표의 분류항목 9번에서 기타 육상운수사고(철도사고 포함) 분류번호 V80-V89를 포함하여 32개의 항목을 재해 해당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을가 제1호증의 3), 위 재해보장특약에 특약이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로 되는 보험사고는 위 재해보장특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사고가 위 재해분류표의 32개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위 재해분류표 분류항목 9번의 기타 육상운수(철도사고 포함)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가 위 재해분류표 작성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1995. 1. 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상의 기타 육상운수사고(철도사고 포함) 분류번호 V80-V89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을가 제2호증의 2, 3 참조 : 위 분류번호 V80-V89의 세부 항목에 이 사건 사고와 같은 형태의 재해가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 또한 그 세부 항목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위 재해분류표 상 제1항의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자’ 항목



중 V05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충돌로 다친 보행자’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고의적 자해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X60-X84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위 재해보장특약 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에는 위 고의적 자해가 위 32개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재해분류표에 따른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재해”가 되려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우발적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1. 19. 선고 2001다 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한 행위에 의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경우에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이를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다만 피보험자가 사고를 유발하여 장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피보험자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라면 우연성이 충족된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보험자인 C이 우울증 등으로 몇 차례 치료받은 사실만으로 C이 사고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로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사고가 위 재해보장특약 약관이 정한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해보장특약 제11조 (1)에 의하여 주계약 약관 제14조 (1) 제1호가 적용되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같은 약관 단서에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도 위 약관 단서에 따라 그것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계약 약관 제14조는 보험계약 관계자가 스스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까지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전체 보험가입자 사이의 보험급여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의 지급을 면책시키되,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스스로를 해친 경우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될 수 있다는 고려에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험약관에서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것이지만, 위 주계약 약관에 따른 보험사고(주계약 제11조)와는 별도로 위 재해보장특약에 따른 보험사고인 “재해”는 위 특약 약관 별표 2의 재해분류표에 의하여 그 재해의 종류 및 내용이 정하여져 있으므로{제1심 공동피고 H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이 사건 사고가 위 회사 보험계약 주계약 약관(을나 제2호증) 제18조 제9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고, 따라서 피고 B주식회사의 주계약 약관 제14조에 해당하는 약관 제20조가 바로 적용되어 인정된 것이므로, 특약이 적용되는 이 사건의 경우와는 다르다}, 재해보장특약이 정하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 주계약 약관 제14조가 특약 제11조 (1)항에 의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의 자살이 위 재해분류표 상 32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고 보험금지급사유가 없기 때문에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주계약 약관 제14조를 만들어 원고에게 제시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보험료를 받아오다가 C의 자해사고가 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험금 상당의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데도 마치 그러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주계약 약관 제14조를 만들어 원고에게 제시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하여서 원고가 취득한 이득이 위 보험금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0-21

재판장 판사 김대휘 _____

 판사 이병한 _____

 판사 최석문 _____